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의안 번호	1531
----------	------

2016년 12월 19일  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. 11. 16. 이상목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 : 2016. 11. 21.

다. 상정 일자 :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, 2016년 12월 19일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상목 의원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,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의원의 교육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수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, 교육연수과정의 세분화,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·시행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등 교육연수의 기본원칙을 정함(안 제3조 신설).
-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).
- 의원의 교육연수과정을 기본교육, 직무교육, 교양교육, 특별교육 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토록 함(안 제6조 신설).
- 의원의 교육연수에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·운영토록 함(안 제7조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첨부).

다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####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)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교육연수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·시행계획, 교육연수과정, 교육연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음.

#### 2 기본원칙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)으로 하여금 ① 의원 교육연수 사업 적극 발굴·시행 및 지원, ②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자유롭고 충분한 기회 제공, ③ 의원 교육연수 선택권 제공 등을 하도록 의원 교육연수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음.
- 또한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 및 직무능력 향상,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함양,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, 기본 교양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적절히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.

**제3조(기본원칙)** ①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
② 의장은 의회 안에서 **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** 노력해야 한다.

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**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,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,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돼야** 한다.

④ 의장은 **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**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
- 이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수반되는 전문성, 능력, 교양 등을 함양하기 위한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을 명문화한 것으로,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연수 사업 계획의 수립·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.

### 3 교육연수 기본계획 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 의장으로 하여금 의원 임기 개시 후 ① 교육연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② 교육연수 추진 내용 및 운영 사항, ③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, ④ 교육연수 실태점검 및 평가, ⑤ 교육연수 진흥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방안, ⑥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포함한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”)을 수립해 안 제7조에 따라 구성되는 교육연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의장은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,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.

**제4조(교육연수 기본계획)**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시행해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
4.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
5. 교육연수 진흥에 필요한 자원 확보방안
6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- 이는 4년 주기로 새로 구성되는 의원들의 의정교육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, 의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연수 수요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연수 지원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4 교육연수 시행계획 (안 제5조)

- 안 제5조는 의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)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·시행하도록 하되, 시행계획에는 안 제6조의 교육연수과정, 과정별 교육연수시기, 교육 연수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.
- 또한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된 교육연수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하고,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

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**제5조(교육연수 시행계획)**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·시행해야 한다.  
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,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.  
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  
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- 이는 4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체계적 연계성을 강화하고, 매년 시행계획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와 환류를 통해 의원 교육연수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## 5 교육연수과정 등(안 제6조)

- 안 제6조는 교육연수과정을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·직무·교양·특별 교육으로 구분하고,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와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음.
- 또한 의장으로 하여금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, 실습, 토의, 사례발표,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
**제6조(교육연수과정 등)**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·직무교육·교양교육·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  
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  
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, 실습, 토의, 사례발표,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

- 이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교육연수과정을 세분화하고 교육연수 목적별 연수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, 의원 개개인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그 목적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## 6 교육연수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7조)

- 안 제7조는 의장이 ① 의원 교육연수 정책 수립 및 조정,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, ③ 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, ④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-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의원 교육연수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, 의회 의원,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으며,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음.
- 이는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, 수요자인 의원의 입장 등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의원 교육연수의 실효성을 제고 하려는 취지로 해석됨.

**제7조(교육연수위원회)** ① 의장은 **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**

1.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
  2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
  3.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
  4.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**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의회 의원,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**
- ③ **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**
-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- 한편,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도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,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위원회 설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(별첨 1 참조).

## 7 예산 지원(안 제8조)

- 안 제8조는 의장으로 하여금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해 실시한 경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이 때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 참여 관련 증빙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,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**제8조(예산 지원)** ① 의장은 **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**

-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**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**
-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.

- 이는 획일적인 집합 교육을 실시하기보다 의원별 관심 분야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증빙서류 제출과 이를 불이행 시 예산 전부를 반환해야 함을 의무화 함으로써 예산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## 8 종합 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의원의 교육연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사항을 신설함으로써,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성 및 능력을 함양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아울러 사업 집행 부서에서는 조례안에서 정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 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  
(이상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1월 16일  
발 의 자 : 이상목·김인제·김미경  
박기열·김선갑·김동욱  
김기대·송재형·문형주  
장우윤·박마루·우미경 의원  
(12명)

### 1. 제안이유

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,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의원의 교육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수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, 교육연수과정의 세분화,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·시행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등 교육연수의 기본원칙을 정함(안 제3조 신설).
- 나.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함(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).
- 다. 의원의 교육연수과정을 기본교육, 직무교육, 교양교육, 특별교육 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토록 함(안 제6조 신설).
- 라. 의원의 교육연수에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·운영토록 함(안 제7조 신설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기타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#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①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·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
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,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,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돼야 한다.

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
제4조(교육연수 기본계획)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시행해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
1.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
4.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
5. 교육연수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
6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5조(교육연수 시행계획)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, 교육연수기간



등을 포함해야 한다.

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제6조(교육연수과정 등)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·직무교육·교양교육·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, 실습, 토의, 사례발표,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

제7조(교육연수위원회)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1.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

2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

3.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

4.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의회 의원,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8조(예산 지원)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7조(교육연수위원회), 제8조(예산지원)
  - 교육연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시 비용발생
- ※ 의원 교육연수활동사업은 서울시의회사무처(의정담당관)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
(천원)

단위사업	2015년예산	2016년예산	증감
의회운영 지원 - 사무관리비(의정역량강화 교육)	2,000	4,000	2,000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 해당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- 총 소요예산 : 28,800천원 (단위 : 천원)

계	2017	2018	2019	2020	2021
28,800	5,760	5,760	5,760	5,760	5,760

- 비용추계 전체

- ▶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(안 제7조 제2항)하되 수당 지급대상 위원을 8명(공무원이 아닌 위원)으로 전체
- ▶ 위원회 회의 개최 회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용산출이 곤란하나, 위원회 회의 개최 통상의 예(연4회)를 들어 비용을 산출

- 산출금액 : 5,760천원

- ▶ 수당 : 150,000원×8명×4회 = 4,800천원
- ▶ 업무추진경비 : 30,000원×8명×4회 = 960천원

※ 서울특별시 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(p153) 및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(p134)참조

- ▶ 위원회 참석수당 : 기본 100,000원(2시간 이내), 초과 50,000원
- ▶ 업무추진경비 :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집(p21)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 별표1(음식물 가액범위 : 3만원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  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    승    우  
예산분석팀장      이철희  
분석관(주무관)    송경수

☎ 02-3705-1276 / e-mail : kssong1@seoul.go.kr